



농림축산식품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

1. 관련 : 코로나19 중수본-26501(2020.10.11.)호, 26502(2020.10.11.)호.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0.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되,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3. 각 과 및 기관에서는 불임을 참고하시어 소관 시설·협회·단체·조합 등에 신속히 안내해 주시고,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불임 1.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 사항 안내(중수본-26502). 1부.
2.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 사항 안내(중수본-26501). 1부. 끝.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전체과, 소속기관(농을), 산하기관(농병)



주무관 **조수영** 서기관 **양지연** 대결 2020.10.11.

협조자

시행 식품산업정책과-3368 (2020. 10. 11.) 접수

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,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/ <http://www.mafra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2113 팩스번호 044-868-7907 / lucid@korea.kr / 비공개(5)

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 사항 안내

1. 관련 근거

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0.10.11.)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추석특별방역기간 이후 방역 조치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.

3. 일일 확진자수 감소 추세, 의료여력,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되, 수도권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더딘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 시행되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일부 유지합니다.

4. 중앙정부, 지자체, 관련 산하 및 공공기관에서는 조정된 거리두기 단계 내에서 아래와 같은 방역 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
*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,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○ 적용 기간 : 2020년 10. 12.(0시 부터) ~ 별도해제시까지

○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

· (제1항)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· (제1항 제2호)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· (제1항 제2의2호)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1).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

○ 대상 시설 :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

○ 조치 내용 : 집합 금지

붙임 1. 고위험시설(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) 집합금지 조치 1부

○ 대상 시설 :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, 유통물류센터

○ 조치 내용 : 집합 제한

붙임 2. 고위험시설 11종 집합제한 조치 1부

2). 집합·모임·행사

○ 조치 내용 :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·공적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 해제하되, 개최 자제 권고

- 집합·모임·행사를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권고
- 다만,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(100명 이상)이 모이는 전시회·박람회·축제·대규모 콘서트·학술행사 등 5종 행사는 시설면적 기준 인원 제한(4㎡ 1명)

붙임 3. 5종 행사 집합제한 조치 1부

3). 스포츠 행사

○ 조치 대상 :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

○ 조치 내용 : 수용 인원의 30%까지 관중 입장 허용

- 추후 코로나19 상황 고려 단계적 확대

4).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

○ 대상 시설(16종) :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(150㎡ 이상), 워터파크, 놀이공원, 공연장, 영화관, PC방, 학원(300인 미만, 교습소 포함), 직업훈련기관, 스터디카페, 오락실, 종교시설, 실내 결혼식장, 목욕탕·사우나, 실내 체육시설, 멀티방·DVD방, 장례식장

○ 조치 내용 : 집합 제한

- 시설 내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이용자 간 거리두기, 주기적 환기·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

붙임 4. 다중이용시설 16종 핵심 방역수칙 1부

5). 교회

○ 대상 시설 : 서울·인천·경기 지역 교회

○ 조치 내용 : 대면예배 허용(예배실 좌석 수의 30% 이내)

- 소모임·행사·식사 금지는 유지, 대면예배 비율은 코로나19 추이 등에 따라교계 등과의 협의를 통해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

붙임 5.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1부

6). 실내·외 국공립시설

○ 조치 내용 : 실내·외 국공립시설*제한적 운영

- 이용 인원은 수용가능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
- * 박물관, 미술관, 공연장, 도서관, 고궁, 공원, 경마·경륜·경정 등

7).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

○ 대상 시설 : 복지관, 경로당, 장애인주간보호시설, 지역아동·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, 어린이집

○ 조치 내용 : 운영 재개하되 시설별 방역 대응지침 마련·시행

8). 유연·재택근무 활성화

○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

※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

9). 마스크 착용 의무화

※ 질병관리청(중앙방역대책본부)에서 배포 및 시행예정인 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” 참고

5.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

- 각 부처, 지자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또한,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,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,
 - 각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,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,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(행안부)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자체, 관련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

수신자 본부각과장, 중앙행정기관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서울특별시청, 인천광역시청, 경기도청



주무관	김재희	행정사무관	이성경	생활방역팀장	김정숙	전략기획반장	손영래
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 본부 총괄책임 관	이기일	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 본부 부분부장	강도태	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-19중 앙사고수습본 부 부분장	박봉후		

협조자

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6502 접수 식품산업정책과-3367 (2020. 10. 11.)

주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검복지부 (정부세종청사 10동) / <http://ncov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1722 팩스번호 044-202-1971 / jaehuekang@korea.kr / 비공개(5)

[붙임1] 수도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조치

1 적용 지역

- 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

2 적용 대상

- (대상)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

* 방문판매·다단계판매·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

※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·조정 가능하며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3 적용 기간

- 2020년 10월 12일(월) 0시 ~ 별도 해제 시까지

※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
4 법적 근거

-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호, 제80조제7호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5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한 **집합금지**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**집합금지 조치**)



② (지자체) 관내 **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**,
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(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

③ (지자체) **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**, **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**

○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☞ 감염병예방법(제49조제1항제2호)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**집합금지 조치**

- 위 기간 동안 **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**

○ 지자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

- 관내 **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**

※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,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- 해당 시설에 대해 준수사항,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 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**안내**

- 이행 여부 등 **현장점검 실시**

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고발 조치(벌금300만원 이하)** 및 **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**

[붙임2] 수도권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

1 적용 지역

- 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

2 적용 대상

- (대상)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1종

*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2종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제외

-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대형 학원(300인 이상), 뷔페, 유통물류센터

※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조정 가능하며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3 적용 기간

- 2020년 10월 12일(월) 0시 ~ 별도 해제 시까지

※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
4 법적 근거

-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호 및 제2의2호, 제80조제7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* 제83조제2항 및 제4항은 10월 13일부터 시행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**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**

* 공포(9.29) 3개월 후부터 시행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5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고위험시설 11종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준수 조치
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제한 조치, 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)



② (지자체)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준수 여부 현장점검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

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합제한 조치
 ③ (지자체)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**집합금지 행정조치**
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합금지명령)

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방역지침 준수 조치
 ③ (지자체)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**과태료 부과**
 (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)
 * 계도기간 후 11월 13일부터 적용 가능



④ (지자체) **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,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**

④ (지자체)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**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***
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에 의한 운영 중단 명령), **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**
 * 법률 공포(9.29) 3개월 후부터 적용 가능

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

○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**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(참고1)**

* 다만, 유흥주점·콜라텍·단란주점·감성주점·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수칙 중 '시간제 운영'은 지자체별로 선택적 적용 가능

○ 지자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집합금지 행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→ 고발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

-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**추가 행정조치** 실시

※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,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제한·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-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, 위반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**안내**

-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**현장점검** 실시

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·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**집합금지 행정조치** 실시하거나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대해 **과태료 부과**

* 다만, 과태료 부과는 법률 시행일 및 계도기간을 고려하여 11월 13일부터 적용

-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고발 조치(벌금300만원)** 또는 **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**

*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

- 확진자 발생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**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**

참고

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

고위험시설	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헌팅포차, 감성주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, 유증상자 출입금지 ■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(음식물 섭취 시 제외)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유흥주점 (클럽, 룸살롱 등), 콜라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영업 전/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(대장작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문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■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(최소1m) 거리 유지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	
단란주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■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신고면적 4㎡당 1명) ■ 시간제 운영(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) 	

고위험시설	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노래연습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영업 전/후 시설소독(대장작성) ■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,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(대장작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(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)
실내 스탠딩 공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공연 전/후 시설소독(대장작성)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

고위험시설	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<p>유통물류센터</p>	<p>(사업주 수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일용직(아르바이트생 포함) 및 방문자 포함 - 전자출입명부 설치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사업주 마스크 착용, 종사자들에 마스크 착용 안내 ■ 물류시설(구역)별 방역관리자 지정 ■ 하역·운반 장비, 공용물품(작업복·작업화 등) 매일 1회 이상 소독(대장 작성) ■ 근로자 간 간격 2m(최소 1m)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휴게실·흡연실·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	<p>(근로자 수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일용직(아르바이트생 포함) 및 방문자 포함 ■ 증상 확인 협조, 발열·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■ 마스크 착용 ■ 근로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유지
<p>대형학원 (300인 이상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(세부사항은 교육부 지침 참고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수업 전/후 시설 소독 및 환기(대장작성)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강의실·열람실 등 자리 배치 시 고려 ■ 공용차량 운행 시, 운전자 마스크 착용, 차량 운행 전후 소독(대장 작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
고위험시설	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<p>실내집단운동 (격렬한GX류)</p> <p>* GX(Group Exercise) 줄바, 태보, 스피닝 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수업 전/후 시설소독(대장작성) ■ 1일 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(대장 작성)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
<p>뷔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영업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 ■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*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■ 테이블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,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·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 (입장,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) ■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
[붙임3] 집합·모임·행사 집합제한 조치

① 적용 지역
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

② 적용 대상

-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(100명 이상)이 모이는 전시회·박람회·축제·대규모 콘서트·학술행사
- ※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·조정 가능하며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제한·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③ 적용 기간

- 2020년 10월 12일(월) 0시 ~ 별도 해제 시까지
- ※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
④ 법적 근거

-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호, 제80조제7호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4 추진내용 및 절차

※ 행정조치의 내용 및 범위 등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
① (중대본) 행사 5종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 장관의 집합제한 조치)



② (지자체)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
집합제한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

③ (지자체)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 지자체장이 집합금지 행정조치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·집합금지명령)



④ (지자체)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,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

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

○ 적용대상 집합·모임·행사의 준수사항

☞ 감염병예방법(제49조제1항제2호)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집회·집합 제한조치

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집합·모임·행사를 개최할 경우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(실내·외 구분 없음)의 4㎡당 1명으로 참여 인원 제한

○ 지자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집합금지 행정 조치 → 벌칙 부과 등 조치

① 관내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
② 해당 집합·모임·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,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
③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
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집합·모임·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

☞ 감염병예방법(제49조제1항제2호)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·집합금지 명령

-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(벌금300만원)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- 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

[붙임4] 수도권 다중이용시설16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

1 적용 지역

- 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

2 적용 대상

- (대상) 다중이용시설 16종(아래 표 참조)

<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>

▲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(시설 허가신고면적 150㎡ 이상) ▲ 워터파크 ▲ 놀이공원
▲ 공연장 ▲ 영화관 ▲ PC방 ▲ 학원(300인 미만, 교습소 포함) ▲ 직업훈련기관
▲ 스터디카페 ▲ 오락실 ▲ 종교시설(교회 제외) ▲ 실내 결혼식장 ▲ 목욕탕·사우나
▲ 실내체육시설 ▲ 멀티방·DVD방 ▲ 장례식장

※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·조정 가능하며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3 적용 기간

- 2020년 10월 12일(월) 0시 ~ 별도 해제 시까지

※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
4 법적 근거

-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호 및 제2의2호, 제80조제7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* 제83조제2항 및 제4항은 10월 13일부터 시행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 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**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**

* 공포(9.29) 3개월 후부터 시행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5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다중이용시설 16종 집합제한 및 **방역지침 준수 조치**
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제한 조치, 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)



② (지자체) 관내 **사업장별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준수 여부 현장점검**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

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합제한 조치

③ (지자체)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**집합금지 행정조치**
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합금지명령)

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방역지침 준수 조치

③ (지자체)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**과태료 부과**
 (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)
 * 계도기간 후 11월 13일부터 적용 가능



④ (지자체) **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,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**

④ (지자체)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**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***
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에 의한 운영 중단 명령), **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**
 * 법률 공포(9.29) 3개월 후부터 적용 가능

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

○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**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(참고)**

○ 지자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**집합금지 행정조치** 또는 **과태료 부과** → **고발** 또는 **시설 운영 중단** 등 조치

- 관내 사업장별 **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** 실시

※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,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기능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제한·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-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, 위반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**안내**

-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**현장점검** 실시

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·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**지자체장이 집합금지 행정조치** 실시하거나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대해 **과태료 부과**

* 다만, 과태료 부과는 법률 시행일 및 계도기간을 고려하여 11월 13일부터 적용

-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고발 조치(벌금300만원)** 또는 **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**

*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

- 확진자 발생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**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**

참고

수도권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

□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(150㎡ 이상 의무화)

* 면적 150㎡ 미만은 권고

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-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,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·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▶ 출입자 명부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▶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-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,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·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▶ 마스크 착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

□ 학원(교습소·독서실 포함), 스터디카페, 직업훈련기관

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출입자 명부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▶ 출입자 증상 확인(발열체크 등)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▶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 ▶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▶ 마스크 착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 ▶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

□ 워터파크, 놀이공원

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이용인원 제한 ▶ 출입자 명부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▶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

□ 실내체육시설, 오락실, 종교시설(교회 제외), 실내 결혼식장, 목욕장업, 멀티방·DVD방, 장례식장, 영화관, 공연장

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출입자 명부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 ▶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 ▶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 ▶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

□ PC방

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좌석 간 칸막이 설치된 경우 제외 ▶ 출입자 명부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·이용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 지침 참고 ▶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음식 섭취 시 제외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좌석 간 칸막이 설치된 경우 제외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수기명부 작성 가능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음식 섭취 시 제외

[붙임5] 수도권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

1 적용 대상
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교회

※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조정 가능하며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2 적용 기간

- 2020년 10월 12일(월) 0시 ~ 별도 해제 시까지

※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
3 법적 근거

-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호 및 제2의2호, 제80조제7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* 제83조제2항 및 제4항은 10월 13일부터 시행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**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**

* 공포(9.29) 3개월 후부터 시행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4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교회에 대한 **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준수 조치**
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제한 조치, 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)



② (지자체) 관내 **사업장별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준수 여부 현장점검**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

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합제한 조치	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방역지침 준수 조치
③ (지자체)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합금지 행정조치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합금지명령)	③ (지자체)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(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) * 계도기간 후 11월 13일부터 적용 가능



④ (지자체)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,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	④ (지자체)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*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에 의한 운영 중단 명령),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* 법률 공포(9.29) 3개월 후부터 적용 가능
--	--

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

○ **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**

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**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(참고)**

*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계와의 협의 하에 대면예배 참여인원 등 단계적 확대 가능

○ 지자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집합금지 행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→ 고발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

-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
※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,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기능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제한·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-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, 위반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
-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
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·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하거나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

* 다만, 과태료 부과는 법률 시행일 및 계도기간을 고려하여 11월 13일부터 적용

-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(벌금300만원)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

*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

- 확진자 발생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□ 교회

책임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정규예배 시 예배실당 좌석 수의 30% 이내의 인원 참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이후 단계적 허용 등 지속 협의 ■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* 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 등 ■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■ 출입자 명부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마스크 착용 ■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 소독(대장작성)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정규예배 시 예배실당 좌석 수의 30% 이내의 인원 참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이후 단계적 허용 등 지속 협의 ■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* 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 등 ■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
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

1. 관련 근거

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0.10.11.)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추석특별방역기간 이후 방역 조치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.

3. 일일 확진자 수 감소 추세, 의료여력,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서 1단계로 조정하되, 비수도권의 경우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(또는 집합제한) 조치 등을 일부 유지합니다.

4. 중앙정부, 지자체, 관련 산하 및 공공기관에서는 조정된 거리두기 단계 내에서 아래와 같은 방역 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,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○ 적용 기간 : 2020년 10. 12.(0시 부터) ~ 별도해제시까지

○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

· (제1항)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 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· (제1항 제2호)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· (제1항 제2호의2)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1).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

- 대상 시설 :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
- 조치 내용 : 집합 금지

붙임 1. 고위험시설(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) 집합금지 조치 1부

- 대상 시설 :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, 유통물류센터
- 조치 내용 : 집합 제한

붙임 2. 고위험시설 11종 집합제한 조치 1부

2). 집합·모임·행사

- 조치 내용 :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·공적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 해제
 - 집합·모임·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권고
 - 다만,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(100명 이상)이 모이는 전시회·박람회·축제·대규모 콘서트·학술행사 등 5종 행사는 시설면적 기준 인원 제한(4㎡ 1명)

붙임 3. 5종 행사 집합제한 조치 1부

3). 스포츠 행사

- 조치 대상 :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
- 조치 내용 : 수용 인원의 30%까지 관중 입장 허용
 - 추후 코로나19 상황 고려 단계적 확대

4). 실내·외 국공립시설

- 조치 내용 : 실내·외 국공립시설*제한적 운영
 - 이용 인원은 수용가능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,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철저
 - * 박물관, 미술관, 공연장, 도서관, 고궁, 공원, 경마·경륜·경정 등

5).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

- 대상 시설 : 복지관, 경로당, 장애인주간보호시설, 지역아동·다함께돌봄 센터등 사회복지이용시설, 어린이집
- 조치 내용 : 운영 재개하되 시설별 방역 대응지침 마련·시행

6). 유연·재택근무 활성화

-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
- ※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

7). 마스크 착용 의무화

- ※ 질병관리청(중앙방역대책본부)에서 배포 및 시행예정인 “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” 참고

5.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

- 각 부처, 지자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시설이 불가피 하게 운영을 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또한,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,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,
 - 각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,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,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(행안부)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자체, 관련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

수신자: 본부각과장, 중앙행정기관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14개 시도



주무관 강재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 본부 총괄책임 관	행정사무관 이성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 본부 부분부장	생활방역팀장 김정숙 2020. 10. 11.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중 앙사고수습본 부 부분장	전라기획반장 손영래
---	--	---	---------------

협조자

시행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6501 접수: 식품산업정책과-3366 (2020. 10. 11.)

주: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(정부세종청사 10동) / <http://ncov.mohw.go.kr>

전화번호: 044-202-1722 팩스번호: 044-202-1971 / jaehuekang@korea.kr / 비공개(5)

위험할 땐 119, 험겨울 땐 129

[붙임1] 수도권 외 지역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조치

1 적용 지역

- 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·도

2 적용 대상

- (대상)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
 - * 방문판매·다단계판매·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
 - ※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·조정 가능하며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3 적용 기간

- 2020년 10월 12일(월) 0시 ~ 별도 해제 시까지
 - ※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
4 법적 근거

-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호, 제80조제7호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5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한 **집합금지**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**집합금지 조치**)



② (지자체) 관내 **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**,
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(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

③ (지자체) **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**, **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**

○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☞ 감염병예방법(제49조제1항제2호)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**집합금지 조치**

- 위 기간 동안 **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**

○ 지자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

- 관내 **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**

※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,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- 해당 시설에 대해 준수사항,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 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**안내**

- 이행 여부 등 **현장점검** 실시

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고발 조치(벌금300만원 이하)** 및 **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**

[붙임2]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

1 적용 지역

- 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·도

2 적용 대상

- (대상)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1종

*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2종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제외

-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대형 학원(300인 이상), 뷔페, 유통물류센터

※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조정 가능하며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3 적용 기간

- 2020년 10월 12일(월) 0시 ~ 별도 해제 시까지

※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
4 법적 근거

-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호 및 제2의2호, 제80조제7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* 제83조제2항 및 제4항은 10월 13일부터 시행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 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**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**

* 공포(9.29) 3개월 후부터 시행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5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고위험시설 11종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준수 조치
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제한 조치, 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)



② (지자체)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준수 여부 현장점검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

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합제한 조치
 ③ (지자체)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**집합금지 행정조치**
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합금지명령)

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방역지침 준수 조치
 ③ (지자체)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**과태료 부과**
 (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)
 * 계도기간 후 11월 13일부터 적용 가능



④ (지자체) **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,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**

④ (지자체)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**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***
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에 의한 운영 중단 명령), **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**
 * 법률 공포(9.29) 3개월 후부터 적용 가능

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

○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**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(참고)**

* 다만, 유흥주점·콜라텍·단란주점·감성주점·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수칙 중 ‘시간제 운영’은 지자체별로 선택적 적용 가능

○ 지자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집합금지 행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→ 고발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

-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**추가 행정조치** 실시

※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,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제한·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-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,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**안내**

-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**현장점검** 실시

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·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**집합금지 행정조치** 실시하거나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대해 **과태료 부과**

* 다만, 과태료 부과는 법률 시행일 및 계도기간을 고려하여 11월 13일부터 적용

-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고발 조치(벌금300만원)** 또는 **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**

*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

- 확진자 발생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**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**

고위험시설	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<p>헌팅포차, 감성주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, 유증상자 출입금지 ■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(음식물 섭취 시 제외)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<p>유흥주점 (클럽, 룸살롱 등), 콜라텍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영업 전/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(대장작성) * 문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■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(최소1m) 거리 유지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	
<p>단란주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■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 ■ 시간제 운영(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) 	

고위험시설	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노래연습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영업 전/후 시설소독(대장작성) ■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,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(대장작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(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)
실내 스탠딩 공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공연 전/후 시설소독(대장작성)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

고위험시설	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<p>유통물류센터</p>	<p>(사업주 수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일용직(아르바이트생 포함) 및 방문자 포함 - 전자출입명부 설치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사업주 마스크 착용, 종사자들에 마스크 착용 안내 ■ 물류시설(구역)별 방역관리자 지정 ■ 하역·운반 장비, 공용물품(작업복·작업화 등) 매일 1회 이상 소독(대장 작성) ■ 근로자 간 간격 2m(최소 1m)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휴게실·흡연실·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	<p>(근로자 수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일용직(아르바이트생 포함) 및 방문자 포함 ■ 증상 확인 협조, 발열·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■ 마스크 착용 ■ 근로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유지
<p>대형학원 (300인 이상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(세부사항은 교육부 지침 참고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수업 전/후 시설 소독 및 환기(대장작성)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강의실·열람실 등 자리 배치 시 고려 ■ 공용차량 운행 시, 운전자 마스크 착용, 차량 운행 전후 소독(대장 작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
고위험시설	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<p>실내집단운동 (격렬한GX류)</p> <p>* GX(Group Exercise) 줄바, 태보, 스피닝 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수업 전/후 시설소독(대장작성) ■ 1일 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(대장 작성)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
<p>뷔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출입명부 설치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영업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 ■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*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■ 테이블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,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·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 (입장,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) ■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
[붙임3] 수도권 외 지역 집합·모임·행사 집합제한 조치

① 적용 지역

- 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·도

② 적용 대상

-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(100명 이상)이 모이는 전시회·박람회·축제·대규모 콘서트·학술행사
- ※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·조정 가능하며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제한·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③ 적용 기간

- 2020년 10월 12일(월) 0시 ~ 별도 해제 시까지
- ※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
④ 법적 근거

-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호, 제80조제7호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4 추진내용 및 절차

※ 행정조치의 내용 및 범위 등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
① (중대본) 행사 5종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 장관의 집합제한 조치)



② (지자체)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
집합제한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

③ (지자체)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 지자체장이 집합금지 행정조치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·집합금지명령)



④ (지자체)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,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

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

○ 적용대상 집합·모임·행사의 준수사항

☞ 감염병예방법(제49조제1항제2호)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집회·집합 제한조치

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집합·모임·행사를 개최할 경우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(실내·외 구분 없음)의 4㎡당 1명으로 참여 인원 제한

○ 지자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집합금지 행정 조치 → 벌칙 부과 등 조치

① 관내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
② 해당 집합·모임·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,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
③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
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집합·모임·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

☞ 감염병예방법(제49조제1항제2호)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·집합금지 명령

-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(벌금300만원)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- 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